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87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김장겸 · 주호영 · 조지연
박충권 · 이양수 · 고동진
박준태 · 박덕흠 · 추경호
최형두 · 조은희 · 강대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32조의5제1항 후단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2조의5제2항 후단, 제3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5조의4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의2.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 삭제등의 요청 처리 및 제45조의4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의3. 제44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및 관련 절차 이행

2의4.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의 신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3.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 연락 수단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5조의4(이용자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 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불만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하고, 3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76조제2항제4호의3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를 제4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4 및 제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제3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4의5. 제3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 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 으로 <u>지정하여야</u> 한다. <후단 신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 <u>지정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 회에 통보하여야</u> -----. <u>국내대 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u>
1. · 2.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 <u>삭제등의 요청 처리 및 제45 조의4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 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연락 수 단의 확보</u>
<신 설>	2의3. 제44조의7제2항부터 제4 <u>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 신위원회의 명령 및 관련 절 차 이행</u>
<신 설>	2의4.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

3. (생략)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고의 신고

3.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
-----.

1.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연락 수단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이용자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正当한 의견이나 불만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불만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략)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u>아니한</u> 자 <u><신설></u> <u><신설></u> <u>4의4. (생략)</u> ③·④ (생략)	<u>기산하여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하고, 3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한다.</u>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 -----<u>아니하거나</u> 통보하지 <u>아니한</u>--- <u>4의4. 제3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u> <u>4의5. 제3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자</u> <u>4의6. (현행 제4호의4와 같음)</u> ③·④ (현행과 같음)
--	---